

제 705 호
1979.3.30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정 상 원
편집 : 문화정보관 김 인 봉
전화 75-7834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규 칙

- 제 1795 호 : 서울특별시교통사무위임 규칙 개정 규칙 3
제 1796 호 : 서울특별시 운전면허 접수제 행정 처분 규칙 중 개정 규칙 3

고 시

- 제 127 호 : 도시계획 사업 (도로) 실시 계획 인가 14
제 128 호 : 광전범에 방주사설시 15
제 129 호 : 환지확정 처분 고시 16
제 130 호 : 도시계획 시설 (학교, 도로) 지적 승인 16
제 131 호 : 도시계획 시설 (도로) 지적 승인 17
제 132 호 : 취락구조개선 사업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 (일단의 주
택지 조성 및 시설 (도로)) 지적 승인 18
제 133 호 : 하천점용 (유수인용 및 공작물 설치) 승인 19
제 134 호 : 도시계획 사업 (도로 및 하수도) 실시 계획 인가 19
제 135 호 : 도시계획 사업 (도로 및 하수도) 실시 계획 인가 20

공 고

- 제 97 호 : 공인 신조사용 승인 공고 20
제 99 호 : KS 표시허가 취소 처분 공고 21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1460

규	칙
---	---

서울특별시 교통사무위임규칙 개정
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79.3.30

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

○ 서울특별시규칙 제 1795 호

서울특별시교통사무위임
규칙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교통사무위임규칙을 다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특주하는
교통사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
처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70조
에 의거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
장"이라 한다)의 권한의 일부를
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함을 목적
으로 한다.

제 2 조 (위임사항) 도로교통법에 의
한 시장의 권한중 관할 경찰서장
에게 위임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도로교통법 제 10 조 제 1 항
2. 도로교통법 제 13 조 제 2 항
3. 도로교통법 제 14 조 제 2 항

4. 도로교통법 제 18 조 제 2 항

5. 도로교통법 제 27 조 제 6 항

6. 도로교통법 제 36 조 제 3 항

7. 도로교통법 제 65 조중 운전면허
의 효력정지

8.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2 조
제 1 항

제 3 조 (위임사무의 직접집행) 시장
이 원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
조에 정한 사무집행에 관하여 사
전 승인을 받게하거나 그 일부를
직접 집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운전면허 접수제 행정
처분 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
포한다.

1979.3.30

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

○ 서울특별시규칙 제 1796 호

서울특별시 운전면허 접수제
행정처분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운전면허 접수제 행정
처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내에서 운전하는 자로서 도로교통법 또는 동법에 의한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법칙금 납부 통지서를 교부 받은자와, 즉결심판의 출두 지시서를 교부 받은자 및 교통사고야기 운전자에게 적용한다.

제 5 조 본문을 제 1 항으로 하고

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5 조 (처분구분) ① 이 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2 종류로 구분한다.

② 면허행정처분중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서울특별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, 효력정지처분은 경찰서장이 한다.

제 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6 조 (면허행정처분)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다.

1. 별표 2에 의한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였을 때
2. 1년에 별표 3에 의한 위반점수가 121점에 도달하였을 때

②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한다.

1. 별표 1의 3 및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였을 때
2. 법원 출두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하였을 때, 다만 정지 기간중 출두하여 즉결심판을 받았을 때에는 즉일로 정지처분을 철회한다.
3. 처분기준의 한계는 별표 4에 의한다.

③ 별표 1의 1 통고처분 42개 항목 및 별표 1의 2 즉심외부 13개 항목에 대하여는 점수제 행정처분배정표에 의한 면허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.

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7 조 (행정처분의 절차) ①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적발하여 법치자 적발보고서 및 교통법규 위반자 적발보고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경찰서장은 별표 1의 3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(효력정지)을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.

②적발지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교부받은 범칙자의 주소지가 서울시내인 때에는 5일간, 타시도일 때에는 7일간 면허증을 보관하되, 범칙금 영수증서를 제시하여 면허증을 환부받지 아니한자 중 타시도 거주자는 보관만료기간 익일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타시도에 이첩하고,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즉결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.

③적발지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 통지서 교부시, 범칙자의 주소지가 타시도일때 별표1의2 및 별표1의3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단속 익일 이첩하여야 한다.

④다른 시도에서 이첩받은 교통법칙 사건표 및 즉결심판 청구서에 대하여는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벌과금 집행증명서를 받고 면허증을 환부한다. 이때 면허증이 별표1의3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동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.

⑤전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운전면허 행정처분시는 범칙자가

범칙금을 납부하고 납부고지서와 영수증서를 경찰서장에 제시한 익일부터 면허행정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.

이때 즉결심판을 받은자, 타시도에서 이첩받은 범칙자 및 즉결심판 회부자도 또한 같다.

(교통법칙 사건표와 면허증이 도착 안되었을 때에는 범칙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록후 행정처분사항을 기록하고 통고서와 영수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.)

⑥다른 시도 이첩분으로 행정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단속지 경찰서에서 교통법칙 사건표와 면허증이 도착 안되었을 때는 행정처분기 종료된 날로부터 통고서 이연계 연기조치(1차 5일간씩)를 하여 주되 반드시 경찰서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.

⑦다른 시도에서 이첩된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주소지 경찰서에 출두하였을 때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 이면의 준수사항중 출두일시를 연기하여 기재하고 수리와 동시에 즉결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.

이때 기일 연기사유를 반드시 대

장에 기입하여야 하며 범칙금 납부통고서 이면에는 직인을 날인 교부하여야 한다.

⑧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은 별표 3 교통사고 배점 기준에 의하여 면허 행정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.

이때 타시도에서 이첩받은 교통사고 운전자도 또한 같다.

⑨ 경찰서장은 제 3 항·제 4 항·제 8 항에 의한 면허 행정처분시는 3 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⑩ 시장은 전항에 의거 면허 행정처분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3 일 이내에 운전면허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
이때 제 6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

해당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 4 호 서식에 의한 면허 행정처분 취소 상신을 지시하여 보관품을 회수 면허취소처분을 하고 결과를 당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⑪ 단속지 경찰서장은 교통법칙자 및 교통 즉심위반자가 별표 2 의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교통 범칙금 및 교통즉심 벌과금을 집행한 후 면허주에 대하여 면허취소 상신을 하여야 한다.

⑫ 시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면허취소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당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"별표 1"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"별표 1" 3 운 전 면 허 효 력 정 지

일련 번호	위 반 내 용	적 용 법 규	배 점	내 용
1	음 주 운 전	도로교통법 제 39 조	30	0.5 혈액 1.1 미리미터에 대하여 0.5 미리그램 또는 호흡 1 미터에 대하여 0.25 미리그램 이상 음주하고 운전하였을 때

일련 번호	위 반 내 용	적 용 법 규	배 점	내 용
2	과 속 운 전 가. 제한속도 10 이하 나. 제한속도 10 이상 30 이하 다. 제한속도 30 이상	도로교통법 제 42 조	1 10 20 30	○ 제한속도의 제동장치 기타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 도로 상의 상황 및 차량의 성능 구조 에 따라 타인에게 위배를 초래하 였을 때
3	중 앙 선 침범	도로교통법 제 11 조제 3 항	30	○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를 통행하지 않았을 때 ○ 도로의 중앙우측을 통행하지 않았 을 때
4	운전사 준수 사항 위반 승차거부	도로교통법 제 44 조제 7 항	10	○ 승차거부행위
5	운전사 준수 사항 위반자 가용영업행위	"	10	○ 자가용 영업행위
6	교통사고 발 생시 신고의 무 불이행	도로교통법 제 45 조제 2 항	30	○ 교통사고 발생시 사상자를 구호하 는등 필요한 조치는 하였으나 경 찰관(판서)에게 신고하지 않았을 때 ※소재지내 - 3 시간내 시군읍면(경찰서, 지서, 파출소, 출장소)의 소재지내(고속도로 포함) ※소재지외 - 12 시간내 ○ 교통사고 발생시 사상자를 구호하 는등 조치는 하였으나 지연신고 하였을 때 ○ 즉시(그때 그자리에서 곧) 사상 자를 구호하는등 조치를 하지 않 았으나 소정시간내 신고를 하였을때

"별표2"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"별표2" 취 소 처 분 기 준

일련 번호	위 반 내 용	적 용 법 조	내 용
1	정 원 초 과 가. 승합50% 초과 나. 승용 40% 초과 다. 화물 3명 초과	도 로 교 통 법 제 33 조	시내 버스에 한함. 는 제외 (:출시간전 2 시간)
2	교 통 사 고 야 기 도 주	도 로 교 통 법 제 45 조	사 고 발 생 시 조 치 와 신 고 의 무 를 다 하 지 않 았 을 시 다 만, 교 통 사 고 야 기 후 도 주 하 였 다 가 자 수 하 였 을 때 에 는 90 일 정 지 처 분
3	타 인 에 게 면 허 대 여 (도난분실제외)	도 로 교 통 법 제 55 조	면 허 소 지 자 가 유 면 허 자 또는 무 면 허 자 에 게 면 허 를 대 여 하 여 운 전 하 게 하 였 을 때
4	결 격 사 유	도 로 교 통 법 제 57 조	1. 18 세 미 만 인 자 (다 만 원 동 기 장 치, 자 전 차 면 허 는 16 세 미 만) 2. 필 요 시 취 소 사 유 가. 정 신 병 자, 정 신 미 약 자, 간 질 자, 농 자, 아 자, 맹 자 나. 색 맹 자, 사 지 활 동 이 정 상 하 지 아 니 한 자 다. 아 편, 마 약, 알 쉐 중 독 자 3. 면 허 취 소 일 로 부 터 1 년 이 경 과 하 지 아 니 하 였 지 나, 효 력 의 정 지 를 받 고 있 는 자

일련 번호	위 반 내 용	처 용 법 조	내 용
			4. 1 종 대형면허를 받은자가 25세 미만 이거나 3년 이상의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자
5	적성검사미필	도로교통법 제 61 조	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내 3 년마다 3 개월이 경과 하였을 때 (※ 연기제도 활용)
6	운전면허 행정 처분 기간중 운전	도로교통법 제 65 조	
7	출두기일경과 불출두	도로교통법 제 68 조	정지일로부터 1 개월이 경과된자 다함.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
8	허위 부정수단 으로 운전면허 를 받은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	도로교통법 제 65 조	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
9	위반점수초과	도로교통법 제 65 조	1 년에 121 점 이상
10	타인의 면허로 운전 행위	도로교통법 제 44 조제 7 항	면허취득자가 타인의 면허를 대여 받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로 운전 하였을 때
11	행정처분 기간 중의 자동차 운전	도로교통법 제 44 조제 7 항	운전정지중의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(교의, 과실불문)
12	도로교통법의 다른 법령 규정 에 의한 취소 사유에 해당 될 때		

21-11

197 . . .

21-12 제 705 호

시

보

1979.3.30

<별지제3호>

즉 결 청 구 서

제장	과장	서장

아래와 같이 즉결 청구함

출 두	일시	197	년	월	일	시	분까지
	장소	지방법원 지원즉결 법정으로					
적용 법조	도	로	교	통	법	제	조
	(		법)	제	조	항	
	보	면허증	☐				
	판	통고서	☐				
		스틱카	☐				
		검인	☐				
		지방법원장	귀하		197	년	월
		지원장					일
		경찰서장 ㉠					

진 술 서

위 반	주소	시	도	구	군	동	면	가	리	번	지	호
	성명	주만등록번호						남	□	당	년	
차량	사	업	용	☐				사	계	호	차	
	비	사업용	관	☐				자	도	계	호	중
운전 면허	제	종	대형	☐				보통	☐			
	소형	☐				시	계	호				
	복수	☐				원자	☐					
	국제	☐				도	호					
위 반	일시	19	년	월	일	시	분경					
	장소	시	도	구	군	동	면	가	리	번	지	호
위 반 사 항	※ 위반내용:											

위 사실을 진술하고 본인서명 날인함. 진술인 ㉠

증 인	주소	시	도	구	군	동	면	가	리	번	지	호
	성명	㉠						당	년	남	□	여

내무부

2502-1-37A

140mm X 195mm 상지 508/㉠

21-13

면허취소상선

[illegible]

고 시

○ 서울특별시고시 제 127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)
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제26조 전설부고시 제4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2. 본 공사로 수용되는 토지, 건물 등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니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함.
3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에

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
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3.30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의 시행지: 성북구 석관동
323의1-90의19간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석관동
저탄장 진입로 포장공사

다. 사업의 규모: 가. 폭 20m

나. 연장 400m

라. 사업의 시행자: 서울특별시장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:
인가일 - 79.4.30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, 건물:
별첨조서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
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
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:
별첨조서

공 사 토 지 가 격 조 서

번호	소재지	지목	수용면적	소유자		비고
				주 소	성명	
1	석관동 323-1	대	86㎡	중구율지로7가97	김윤혁	
2	" 326-21	도	2㎡	성북구석관동206	장천산	
3	" 326-18	도	16㎡	성북구석관동206	"	
4	" 326-24	도	5㎡	성북구석관동326-20	이상길	
5	" 326-2	도	20㎡	성북구성수동2가316-20	박종국	
6	" 51-11	도	41㎡	종로구봉익동161	오상용	
7	" 58-9	도	241㎡	동대문구답십리동465-44	김해숙	
8	" 58-330	도	400㎡	전주시풍납동3가54-5	이종선	
9	" 56-1	도	185㎡	중구충무로3가34-6	김현	
10	" 55-1	전	3㎡	성북구석관동232	황수만	
11	" 55-2	도	13㎡	성북구석관동232	"	

제 705 호

시

보

1979.3.30

21-15

번호	소재지	지목	수용 면적	소유자			비고
				주 소	성 명		
12	석판동 57-18	도	280㎡	도봉구 공농동 107-52	김 병 만		
13	" 58-127	"	79㎡	중구 을지로5가 27-1	김 현 배		
14	" 90-43	"	716㎡	중구 선당동 368-66	김 대 순		

공사건물가액조서

번호	소재지	구조	수용 면적	소유자			비고
				주 소	성 명		
1	석판동 58-128	연와조세면와층 평옥개주택	12㎡	석판동 58-128	김 재 곤	71.10.10	
2	" 58-12	연와조세면와층 주택및점포	3㎡	석판동 58-12	최 동 철	72.7.7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28 호

광전병예방주사 실시

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5 조 제 1 항
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광전병
예방주사를 실시함을 둔법 시행규칙
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1979.3.29

서울특별시장

1. 실시목적: 광전병 예방
2. 실시지역: 서울특별시 전역
3. 실시대상: 개
4. 실시기간: 1979.4.10-5.10.
5. 기타사항: 본 기간중에 예방주
사를 맞히지 않은 개에 대하여는
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10 조 제 3 항
의 규정에 의하여 박살등 필요한
처분을 한다.

구. 출장소별제회및예방약품배정표

구 별	차제회두수	예 방 약		속 전 폐	증정서용지	비 고
		관 수	인 수			
총 로	2,500두	400두분	2,100두분	2,500개	2,500매	
중 구	1,500	250	1,250	1,500	1,500	
동 대 문	7,000	1,170	5,830	7,000	7,000	

구 별	1 차 계획두수	예 방 약		축 건 때	증명서용지	비 고
		관 수	인 수			
성 북	6,500 두	1,090 두분	5,410 두분	6,500 개	6,500 매	
도 봉	6,500	1,090	5,410	6,500	6,500	
성 동	6,000	1,000	5,000	6,000	6,000	
서대문	3,000	500	2,500	3,000	3,000	
마 포	3,500	590	2,910	3,500	3,500	
공 산	2,500	420	2,080	2,500	2,500	
영 동포	3,500	590	2,910	3,500	3,500	
관 약	8,000	1,340	6,660	8,000	8,000	
강 남	2,000	300	1,700	2,000	2,000	
강 서	1,500	250	1,250	1,500	1,500	
은 평	3,500	590	2,910	3,500	3,500	
천 호	2,500	420	2,080	2,500	2,500	
계	60,000	10,000	50,000	60,000	60,000	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9 호

관지확정처분고시

1.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북아현 2, 서빙고 1, 아현 2, 고척지구 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 재개발법 제 4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지확정처분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지확정처분 조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 및 서대문, 용산, 마포,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에

공한다.

1979.3.31

서울특별시 장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0 호

도시계획시설(학교·도로)
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62 호(79.2.10)로 결정 및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학교·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

제 705 호

시

보

1979.3.30

21-17

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의 권한 위 임 사항에 의거 이불 고시한다.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가. 학교 지적승인조서	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 1979.3.30 서울특별시장
--	--

구분	시설명	위	치	면적 (평방미터)	비	고
신설	학교용지	강남구	암사동 362 일대	33,058 (10,000 평)	지내소로	폐지

나. 도로 폐지 조서

구분	등급	부별	번호	폭원	연장	기	점	총	점	비	고
기정 변경	소로	3		6 m	165 m	암사동	362	암사동	362		폐지
기정 변경		3		6 m	210 m	암사동	42-11	암사동	42-3		폐지
기정 변경		2		8 m	190 m	암사동	42-12	암사동	42-4		폐지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1 호

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604 호 (78.11.15) 로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614 호 (78.11.21)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이 대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7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 하
- 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불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천호출장소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- 1979.3.30
서울특별시장

가. 도로 지적승인 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점	소로	3		6	20	강남구 문촌동 88-4	강남구 문촌동 88-4	
변경	소로	2		8	27	강남구 문촌동 88-4	강남구 문촌동 88-4	가각 및 폭원추가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 도시 제 132 호

취락구조개선사업에위한도시계획
사업 (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) 및
시설 (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83 호 (79.2.26) 로 결정고시된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 및 시설 (도로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

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의 권 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 다.

2. 판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과와 도시계획 2 과 및 천호출장 소 도시정비과, 새마을과, 시민봉사 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3.30

서울특별시 장

가. 도시계획사업 (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) 지적승인 조서

마을명	위 치	면적 (평방미터)	비 고
양지마을	강남구 암사동 275-2 대 일대	37,560 (11,362평)	

나.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 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건설	소로	3		6	360	암사동 276-1	암사동 244	양지마을
건설	소로	3		6	154	암사동 269	암사동 266-6	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133 호

하천점용(유수인용및공작물설치)승인

다음과 같이 하천점용(유수인용
및 공작물설치)협의를 하천법 제 6
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였기 이
를 고시한다.

1979.3.30

서울특별시장

가. 승인년월일 : 79.3. .

나. 위치 : 강남구 을원동 90-114
앞 단천

다. 목 적 : 농업관계용 양수장시설

라. 승인내용

- 1) 점용면적 : 1,884㎡
- 2) 공작물
 - 집수암거 (D 800㎜) 300 ㎜
 - 집수정 1개소
 - 양수장건물 1개소
 - 도수로 (D 200 ㎜) 582 ㎜
- 3) 준공기한 : 79.7.31
- 4) 점용기간 : 10년

마. 피승인자 : 강남구청장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134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및하수도)
실시계획인가

1. 건설부 고시 제 109 호 (76.7.19)

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
시계획사업(전경대 진입로확장)에
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
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
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
(77.3.19)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
한다.

2. 관계도서는 은평출장소 시당봉사
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
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. . .

서울특별시장

(다 음)

1. 사업시행지 : 서대문구 갈현동
326 번지
2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로 및 하
수도 전경대 진입로 확장
3. 사업의규모 : 도로확장 B = 30 ㎜
L = 615 ㎜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 (은평출
장소장)
5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:
착수 : 실시계획인가일 79.3
준공예정 : 1979.11.20
6. 인가번호 : 서울특별시고시제 134 호
7. 수용토는 사용할 토지 건물외 소
제지 지반, 지목 및 소유권 이외
의 권리명세 : 별첨 토지조서 참조
8. 토지 또는 건물외 소유자와 토지
수용법 제 4 조 제3항의 관계인주소

성명 : 별첨 토지조서 참조
(인가조건)

별첨 개략 설계도서(평면도)에 의하여 시공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5 호

도시계획사업(도로및하수도)
실시계획인가

1. 고시 제 154 호(74.10.23)로 시설·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(대조동지내 도로신설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(77.3.19)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은평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

서울특별시 장

(다음)

1. 사업시행지 : 서대문구 대조동 산 4-3 172-134번지
2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로 및

하수도, 대조동지내 도로신설

3. 사업의규모 : 도로 확장 $B = 15 m$
 $L = 800 m$

하수도 ($D=600\phi$) $L = 1,600 m$
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장(은평출장소장)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

착 수 : 실시계획인가일 '79.3

준공예정 : 1979.12.30

6. 인가번호 :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5 호

7.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건물외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토지조서 참조

8. 토지 또는 건물외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: 별첨 토지조서 참조

(인가조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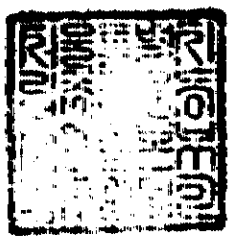
별첨 개략 설계도서(평면도)에 의하여 시공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

◎ 서울특별시 공고 제 97 호

공인신조사용승인

서울특별시 공인물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

조제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 1979.3 서울특별시장		© 서울특별시 공고제 99 호 KS 표시허가취소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 허가취소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. 1979.3.31 서울특별시장
1. 공인명 : 서울특별시립종합운동장건설본부장수판의인 2. 사용개시일 : 1979.3.27 3. 인영 : 별첨 공 인 의 인 영		1. 허가번호 : 제 1457 호 2. 허가일자 : 78.12.26 3. 제조업체명 : 한국전선공업(주) 4. 대표자 : 박 영 현 5. 소재지 :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-3 6. 급격번호 : KSC 8305 7. 품 명 : 콘센트 및 플러그 8. 종류및등급 : 브레트형 2중절연 플러그(코오드부) 300 V / 6 A, 10 A 9. 취소사유 : KS 표시허가 자진반납 10. 취소일자 : 79.3.31
인		
영		
공인명	서울특별시립종합운동장 건설본부 장수판 인	